

새로운 100년, 김천노약

체 결 일

2021. 8. 20.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경상북도김천의료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단체협약서

【전 문】

경상북도 김천의료원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권과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보건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기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 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이를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교섭단체】

- ① 의료원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
- ② 교섭단체 관련 기타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조 【조합가입 및 대상】

- ① 직원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조합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제4조 【협약의 우선 효력】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의료원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정한 모든 제 규정 및 조합원 개별 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의료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개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6조 【자료열람 및 협조】

의료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협조한다.

제7조 【조합활동보장】

- ① 의료원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의료원은 조합운영에 개입 할 수 없다.

제8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 ①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료원의 승인을 거친 후 근무시간 중이라도 교섭에 임할 수 있다.
- ② 의료원은 조합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근로시간면제】

- ①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연간 2,500시간을 보장하며, 조합원 중에서 6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
- ② 복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③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제외한 통상적인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④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조합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에 한해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 ⑤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조합원은 연간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의료원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원은 제4항의 목적에 합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⑥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함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⑦ 의료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로 인해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경우 동등한직에 복귀시킨다.

제10조 【시설공여 및 편의제공】

- ① 의료원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 1곳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사용 방법은 노조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② 의료원은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의 제공에 협조한다.
- ③ 조합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원의 협조를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의료원으로부터 대여 받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의료원의 시설물,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 ① 조합은 의료원이 제공한 공간에 한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공간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하여 부착하지 아니한다.
- ② 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내외에 한하여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으며, 게시판 이용외의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조합원에 한하여 배포한다.
- ③ 노사 공히 홍보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한하여 한다.
- ④ 홍보활동의 내용이 노사 쌍방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비 공제】

- ① 의료원은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 ② 본인 동의를 득한 조합결의 의무금에 대해서도 일괄 공제하여 조합계좌에 불입한다.
- ③ 조합은 조합원 명단(변동내역 포함)을 매월 임금 지급일 10일전까지 의료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월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유지 노력】

의료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인력을 확보,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 【휴업수당】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복 제공】

의료원은 조합원들에게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교섭요구】

- ①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노사 쌍방은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한 안건과 관련해서는 당해 교섭일에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교섭요구 후 발생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18조 【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노사동수로 각 6명 이내로 하되, 사전에 그 명단을 상호 제출한다.

제19조 【교섭의무】

- ①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 수 없다.
- ②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20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체협약의 해석 요청】

-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해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사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경우 해석을 요청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각측의 의견을 동시에 제출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준한다.

제23조 【쟁의행위 보장 등】

의료원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24조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갱신효력 발생일은 합의일로 한다.
-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 【효력이연】

본 협약의 기간 만료 전에 의료원 또는 조합의 명칭 혹은 조직체가 변경될 경우 이 협약의 변경 없이 이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조 【보충협약】

- ① 노사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시 별도로 정한다.
- ③ 1항에 의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가 동의하였을 경우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서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의료원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6조 【준용】

-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의료원 제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 ② 본 협약 중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각 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법령에서 부칙 등으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1년 8월 20일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노동조합

의료원장 정 용 구 (인)

위원장 강 해 연 (인)

